국제교류 규정

제 1 장 총 칙

- 제 1조 (목적) 본 규정은 호서대학교(이하 "본 대학교"라 함)와 외국의 대학·학술단체 및 유관기 관과의 학술 및 정보의 교류·협력, 교직원·학생의 교류와 기타 호혜적 협력사업을 통하여 상호 이익을 증진하고 본 대학교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 2조 (조직) 본 대학교의 국제교류 증진을 위해 이에 관련된 장·단기정책을 기획하고 구체적 사업 수행을 위한 실무부서로 국제협력원(이하 "협력원"이라 한다)을 두며, 국제교류에 관련 되는 중요 사항을 심의·검토하기 위하여 국제교류운영위원회를 둔다. (개정 2012. 10. 23)
- 제 3조 (국제교류운영위원회) ① 국제교류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국제협력원장(이하 "협력원장"이라 한다)이 되고, 위원은 5명 이내로 두며,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 (개정 2012. 10. 23)
 - ② 위원장의 임기는 협력원장의 보직기간 동안이며,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(개정 2012. 10. 23)
 - ③ 국제교류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 - 1. 외국 기관과의 교류계획 및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
 - 2.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 2 장 국제교류 협정

- 제 4조 (대상기준) 국제교류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기관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으로 한다.
 - 1. 본 대학교의 학문의 질적 수준 향상에 현저하게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선정한 국가 의 대학 및 연구기관
 - 2. 한국학 관련 강좌를 개설하여 활발하게 연구를 전개하고 있는 외국의 대학 및 연구기관
 - 3. 지역연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가의 대학 및 연구기관
 - 4. 기타 본 대학교의 장기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학 및 연구기관.
- 제 5조 (절차) ① 국제교류협정의 체결은 국제교류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총장이 함을 원칙으로 한다.
 - ② 대학 차원에서 외국의 대학이나 학술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국제교류협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력원에서 교류대상국가 및 그 기관과 교류목적·교류내용 등을 기획한다. (개정 2012, 10, 23)
 - ③ 대학, 대학원, 연구소 또는 부속기관(이하 '부서'라 한다)이 외국의 대학이나 연구기관과 국제교류협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, 당해부서는 협력원과 협의 후 교류대상국가 및 그 기관과 교류목적, 교류내용 등의 계획서를 문서로 작성하여 협력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(개정 2012. 10. 23)
- 제 6조 (협정체결권자) ① 협정체결의 대표로서 서명할 수 있는 사람은 협정의 내용과 목적에 따라 총장, 대학원장, 학장, 연구소장 및 부속기관의 장이 협정사항을 문서로 작성하여 쌍방의 대표가 서명하고 교환함으로써 성립한다.
 - ② 동일한 기관을 대상으로 2개 이상의 부서에서 동시에 교류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협력원의 주관 하에 총장명의로 체결한다. (개정 2012, 10, 23)

- 제 7조 (보고) 협정을 체결한 부서장은 국제교류의 결과를 협력원에 통지하여야 하며 협력원장은 이를 총장에게 보고한다. (개정 2012, 10, 23)
- **제 8조 (협정의 시행)** 체결된 국제교류협정의 구체적 시행은 본교 내규에 의하거나 또는 협력원에서 주관한다. (개정 2012. 10. 23)
- 제 9조 (서류보관) 국제교류협정서 등 국제교류에 관련된 서류는 그 원본을 협력원에서 보관·관 리한다. (개정 2012. 10. 23)

제 3 장 학술·정보의 교류 및 협력사업

- 제10조 (교류내용과 방식) ① 대학교 차원의 학술·정보의 교류 및 협력사업에 대한 내용과 방식 및 기타 관련사항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협력원에서 실행한다. (개정 2012. 10. 23)
 - ② 대학원, 대학, 연구소 또는 부속기관이 학술·정보의 교류 및 협력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력원과 협의 후, 그 내용과 방식 및 기타 관련사항에 대한 계획서를 문서로 작성하여 협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. (개정 2012. 10. 23)
 - ③ 중요한 학술·정보의 교류 및 기타 협력사업에 대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 4 장 교수의 교류

- 제11조 (교류기간) 학술교류협정에 의한 교환교수의 교류기간은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.
- 제12조 (교환교수의 수) 교환교수의 수는 호혜원칙에 따른다.
- 제13조 (보수) 교환교수의 보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견하는 대학에서 지급하며, 초청대학에서는 보수를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강의를 하는 경우에는 초청 대학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.
- 제14조 (숙소제공) 교류협정에 따라 초빙된 교환교수에게는 숙소를 제공할 수 있다. 다만, 이 경우 소정의 관리비(전기료, 수도료, 가스료, 전화료)는 교환교수 본인이 부담한다.
- 제15조 (대상자 선정) 교환대상교와 합의에 의하여 파견분야가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학과·학부에서 적절한 대상자를 추천하며, 파견분야가 지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희망자를 공개모집하고, 협력원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선정한다. (개정 2012. 10. 23)
- 제16조 (외국교환교수 초빙계획) 외국교환교수를 초빙하고자 하는 부서는 최소한 6개월 전에 소 정의 신청서를 협력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협력원장은 외국교환교수 초빙계획에 대해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(개정 2012. 10. 23)
- 제17조 (절차의 준용) ① 국제교류협정이 체결되어있지 아니한 대상기관에 대해서도 특별한 경우에는 외국교환교수의 초빙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본 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준한다.
 - ② 외부기관의 재정지원 하에 시행되는 교수교류의 경우에도 본 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준한다.
- **제18조 (외국 교환교수의 관리)** ① 외국 교환교수가 본 대학교에 체류하는 기간의 관리는 그 교수가 강의 또는 연구를 수행하는 부서에서 담당한다.
 - ② 해당부서에서는 책임교수(Academic counterpart)를 정하여야 한다.

제 5 장 학생의 교류

- 제19조 (본교 교환학생의 선발 및 관리) 본 대학교 교환학생의 선발 및 관리,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학생의 국제교류에 대한 규정에 의한다. (개정 2012. 10. 23)
- 제20조 (외국 교환학생의 관리) 외국 교환학생의 관리는 협력원에서 담당한다. (개정 2012. 10.

23)

- 제21조 (학점인정) 교류협정이 체결된 외국대학에서 연수를 받은 학생의 학점인정에 관하여는 별 도로 정하는 규정에 의한다.
- 제22조 (시행세칙)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

부 칙

- ① 이 규정은 1997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이 규정의 시행이전에 체결된 국제교류협정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간주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.